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82호

2018. 9. 13. (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시의회예규]

제124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4

[입법예고]

제2018-2055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9

제2018-2098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0

제2018-209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1

제2018-2100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2

제2018-2101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

◆ 고 시

제2018-27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남산1근린공원) 15

제2018-289호 도시관리계획(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18

제2018-290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21

제2018-291호 도시관리계획[경의선 서강대역 복합역사개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2

제2018-292호 은평구 제5차 불광동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31

제2018-293호 서울특별시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고시 33

제2018-294호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마포구 상암동 1673번지 건축물 용도 변경) 46

제2018-295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48

제2018-296호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49

◆ 공 고

제2018-2037호 2018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 50

제2018-2039호 과학관 변경등록 공고 51

제2018-2040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51

제2018-204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82

제2018-2044호 서울특별시 물류기본계획 공고 8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90호

제3중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장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염광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토목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중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중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지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토목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중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중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목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토목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중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중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당현인도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점번호: 다사61186013]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토목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월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토목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초안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우이천로 102 (월계동, 초안아파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토목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91호

도시관리계획[경의선 서강대역 복합역사개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12-5번지 일대 경의선 서강대역 지상부 복합역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안)에 대하여 2017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